

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(토목부장)

(경유)

제목 “동작대로(연장)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공사”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최종결과 통보 (2017년도 제14차)

1. 2017년도 제14차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관련입니다.
2. 토목부 - 22917호(2017. 11. 3.)에 따라 「동작대로(연장)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공사」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결과 보완보고서에 따른 최종결과를 통보하오니,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라며, 도로추가 점유(폭, 면적증가)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울시(교통운영과)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출퇴근시간대 (오전 6~9시, 오후 5~9시) 공사차량 진출입을 금지하오니 이점에 유의하시고, 공사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

- 사당고가차도를 활용한 공사안내, 전방 차로운영 안내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도중 교통, 보행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공사시행자(시공사, 감리사, 현장소장, 감리단장)에게는 패널티를 부여, 업무담당자는 문책토록 각 기관별 감사담당실로 통보 조치합니다.
-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함으로써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공사장은 자치구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부서에 통보하여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합니다.

붙 임 : 최종 자문결과 1부. 끝.



주무관 **백바름** 교통운영팀장 **서인석** 교통운영과장 **11/09**
강진동

협조자

시행 교통운영과-21570 (2017.11.9.) 접수 토목부-23438 (2017.11.9.)
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(서소문동) /
전화 2133-2466 /전송 / pblqw6293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

최종 자문결과 통보서

(2017년 제14차)

【 공사 개요 】

공사명	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공사	공사시행자	도시기반시설본부
대상도로	동작대로	차로수	8개 차로
점용기간	2017.12.01.~2018.05.31	점용차로수	1~2개 차로
점용시간	전일	자문일자	2017.09.28
담당부서	토목부	시공회사	-

【 지문 내용 】

	자문 결과	조건부 시행
수반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『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공사』에 따른 <u>교통소통대책(자문회의결과 보완보고서)에 의거 공사를 시행</u>하기 바람 ○ 공사현장에서는 교통소통대책 보고서를 상시 비치하도록 하며, 현장상황에 의해 차로를 임의로 점용하지 말고,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지점별, 단계별 차로점용계획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바람 (<u>출퇴근시간대 공사 차량 진출입 금지 : 오전 6~9시, 오후 5~9시</u>) ○ 공사 관련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추가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고 공사차량의 진출입시 등 반드시 교통통제수를 배치하여 차량을 유도하기 바람 ○ 완화구간에 급작스런 차로변경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, 변경한 경로는 도류화시설이나 임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<u>공사시공자 및 감리회사 등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호울타리 외에 사이렌, 경광등, 진동(노면요철처리) 등과 같은 시설을 보완 설치하기 바람 ○ 단계별 상황에 맞게 주의구간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바람 ○ 공사시행 중 부득이하게 수립된 교통소통대책(점용기간 포함)이 변경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하지 말고, <u>사전에 교통운영과와 변경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협의 후 공사를 시행</u>하기 바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시적이라도 도로 및 보도를 무단 점유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○ 허가 또는 승인 관련부서(관할구청 토목과 및 도로과, 서울시 교통운영과 등)의 현장 점검시 지적된 공사 중의 교통소통 및 안전상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조치하기 바람 ○ 공사시행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결과(해당시)를 별도로 <u>교통운영과에 서면 보고</u>하기 바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문회의 심의결과와 동일한 경우, 유선 통보 후 공사 시행 -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 결과 부득이하게 교통소통대책이 변경된 경우, <u>교통운영과와 변경된 사항에 대해 최종 협의 후 공사 시행</u> ○ 공사감독부서에서는 공사현장에서 교통소통대책의 준수 및 공사일정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사시공자 및 감리회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○ 점용기간이 <u>자문결과 대비 20% 이상 연장될</u> 것으로 예견될 시에는 당초 점용 만료일 45일전까지 점용기간 연장에 관하여 교통운영과와 협의하기 바람 ○ 도로점용 개시 및 완료시에 우리시 교통운영과에 유선으로 통보하기 바람 ○ 6개월 이상의 공사현장은 공사 착수 후 CCTV를 설치하고 교통운영과내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 시켜야하며, 대형공사장은 준공 70%전 도로복구계획을 교통운영과와 사전협의 및 심의 상정해야함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Tel 02-2133-2466, Fax 2133-1053)</p>	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위원장